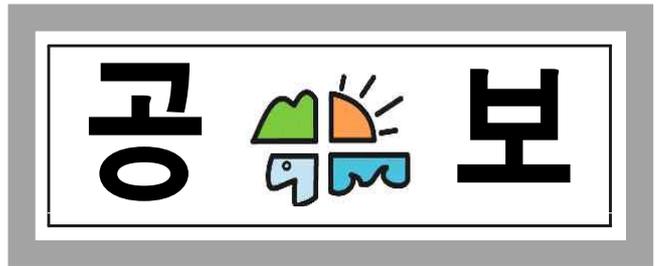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76호 2016년 2월 12일(금)

공 고

-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등 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속 초 시 장

1. 제 명 :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제안이유

의료기관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경우와 관련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각각의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 및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4855 / 속초시 수복로 36

속초시 보건소 예방의약부서

(전화 : 033-639-2920, FAX : 033-639-2554)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보건소 예방의약부서(☎ 033-639-29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속초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
2.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4조 관련)

(단위 : 천원)

근거법령	위 반 사 항	위반횟수별 부과금액		
		1차	2차	3차
「지역보건법」 제34조	1.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등으로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1,000	2,000	3,000

주석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단, 4차 위반행위부터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지역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전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7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종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2015. 6.22)됨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촉진, 양성평등 참여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개정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와 공공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능동적인 양성평등 시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명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함
- 나.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다.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 라. 양성평등정책의 촉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마. 양성평등의 참여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치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 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양성평등 참여확대, 촉진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사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할 곳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우 24826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전화 033-639-2441, 팩스 033-639-2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33-639-2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속초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 조달방법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제1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7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속초시 및 소속기관 직장 내(이하 “직장 내”로 한다.) 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양성평등 참여 및 문화 확산

제19조(적극적 조치) ① 시장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공직 참여)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3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3.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성차별의 금지)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에 방하여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시장은 직장 및 가정·학교·사회교육시설·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는 공공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및 연구발표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2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배정에 관한 특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속초시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속초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